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[별지 제22호-3 서식]

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서

□ 미사용 연차휴급 휴가내역

성 명		채용일	
연차휴가 산정기간	20 . . . ~ 20 . . .		
연차휴가 발생시점		발생 연차휴가 일수	일
연차휴가 사용기간	20 . . . ~ 20 . . .		
사용한 연차 일수		남은 연차 일수	

□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

구 분	사용 시기(지정일)	사용일수
월		
월		
월		
계		

「근로기준법」 제61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) 2항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드리며, 사용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소멸됨을 알려드리니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차질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확 인 자

(서명)

○○○ 부대장